

2025 년도 WISET 제 2 차(정규직) 채용 공고

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(WISET)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입니다.

우리 재단이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종합기관으로 발전하는데 함께 할 의욕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모십니다.

2025 년 1 월 24 일
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이사장 문애리

1. 채용 개요

채용형태	직무	채용 구분	직종	직급	인원
정규직	예·결산 및 계약관리	경력직	행정직	원급~주임급	1명
	국제협력·대외협력		행정직	원급~주임급	1명

※ 자세한 내용 직무명세서 참고

2. 응시자격

· 예·결산 및 계약관리 직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인사규정 제 11 조1)에서 규정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- 비리행위로 해임, 파면, 직권면직 등 직을 상실한 적이 없는 자- 직급별 자격기준은 재단 인사규정에 따름(아래참고)- 학력, 성별, 어학, 연령* 제한 없음* 재단 인사규정 정년** 이하인 자(**행정직-선임급: 만 60 세)
	<p><우대사항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지원 직무와 관련한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 업무 유경험자- 지원 직무와 관련한 중소기업 업무 유경험자
· 국제협력·대외협력 직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국제협력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아래의 어학 요건을 최소 1 개 이상 충족하는 자 (토익 800 점 이상, 텡스 349 점 이상, 토플(IBT) 90 점 이상, 아이엘츠 7 이상) 또는 해외 영어권 국가 학교 졸업자- 인사규정 제 11 조2)에서 규정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- 비리행위로 해임, 파면, 직권면직 등 직을 상실한 적이 없는 자- 직급별 자격기준은 재단 인사규정에 따름(아래참고)- 학력, 성별, 연령* 제한 없음* 재단 인사규정 정년** 이하인 자(**행정직-선임급: 만 60 세)
	<p><우대사항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국제협력 관련 업무 유경험자, 영어능통자- 지원 직무와 관련한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 업무 유경험자

· 우대사항 (공통)	- 청년(만 15세 이상 ~ 만 34세 이하,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 및 5조) - 비수도권 지역인재 ※ 대학까지의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서울·경기·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 인재 (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 해당, 하단의 세부기준 필수 확인) - 저소득층*, 북한이탈주민, 다문화 가족 *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에 의한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
· 가점사항 (공통)	- 장애인 ※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»,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으로 5% 적용

[재단 인사규정 별표2_직원의 채용자격 기준]

직종 직명/직급	행 정 직
행정원/ 원급	1. 학사 학위 취득한 자 2. 상기 각 요건과 동등 이상의 실력 및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주임행정원/ 주임급	1.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[별표 3]에 의거한 3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 2.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[별표 3]에 의거한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 3. 상기 각 요건과 동등 이상의 실력 및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선임행정원/ 선임급	1. 박사 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자 2.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[별표 3]에 의거한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 3.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[별표 3]에 의거한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 4. 상기 각 요건과 동등 이상의 실력 및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[재단 인사규정 별표3_경력환산 기준표]

경 력	동일직렬(A)	동일직군(B)	동일직계(C)
1. 국가기관, 공공기관, 대학(학위기간은 제외) 및 학교에서 근무한 기간			
2. 법률상 법인으로 인정된 민간기업체 및 단체의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	100%	90%	80%
3. 재단 임시직			

3. 전형방법

구분	전형	합격자 배수
1차	서류 전형	채용인원의 10배수 이내
2차	필기 전형 NCS 기반 직업기초능력평가	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
3차	면접 전형	채용 인원 및 예비합격자 2배수 범위 이내

※ 국제협력 분야는 면접 전형 중 영어 회화 능력 검증(PT 등) 예정

1) 제11조(결격사유)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

1.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되는 자
2.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
3.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
4. 정부 및 공공기관, 민간기업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
2) 제11조(결격사유)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

1.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되는 자
2.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
3.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
4. 정부 및 공공기관, 민간기업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
4. 채용 일정

전형	일정	비고
지원서 접수기간	1/24(금) ~ 2/9(일)	18시에 시스템 마감처리 됨
서류전형 심사	2/10(월) ~ 2/19(수)	
서류전형 결과 발표	2/20(목)	지원자 이메일로 전형 결과 개별 통지,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
필기전형	2/23(일)	필기전형 시 서류전형에 작성한 증빙 지참*
필기전형 결과 발표	2/27(목)	지원자 이메일로 전형 결과 개별 통지,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필기전형 전체순위 공개
면접전형	3/5(수) ~ 3/6(목)	
합격자 발표	3/12(수)	지원자 이메일로 전형 결과 개별 통지,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
결격사유여부 확인	3/13(목) ~ 3/14(금)	
임용 예정일	3/17(월)	

※ 위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
- * 서류전형에 작성한 증빙(해당자에 한함): 주민등록 초본(병역사항 포함) 원본, 저소득층·북한이탈주민·다문화가족 증빙서류, 학교교육 성적증명서 원본, 직업훈련 및 기타 교육 수료증, 졸업증명서 원본, 자격증 사본, 경력(재직)증명서 원본, 장애인 증명서 등
- * 국제협력·대외협력 분야 지원자는 영어 자격시험 성적증명서 또는 해외 학교 졸업증명서 제출(필수)

1) 위 증빙서류 제출시 진위확인이 가능하도록 발급일자 제출일 기준 90일 이내

2) 경력증명서는 4대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와 함께 제출(경력증명서와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모두 제출)

3) 증명서와 서류전형 지원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

→ 해당 자료는 인사담당자 확인용으로 면접관에게 배포되지 않음

5. 지원서 접수 방법 및 문의처

- 접수방법 : 채용시스템 접수(<https://recruit.incruit.com/wiset>)
- 문의방법 : e-mail로만 문의 및 접수 받습니다.
- 문의 : ksmdot@wiset.or.kr

6. 주의 및 안내사항

- 1) 지원 직무별 1 개 분야만 지원가능하며,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.
- 2) 지원전형별 결과는 홈페이지에 합격자 공지, 이메일로 개별 통보(불합격자도 통지) 합니다.
- 3)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 - 서류전형 작성시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만 기재(교육 및 경력사항 등 증빙이 가능한 경우)
- 4) **학력, 출신지, 가족관계, 신체조건 등 편견이 개입되는 내용 작성시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**
 - 예시) - 경력사항 및 경력기술서 기재시 **본인 이름, 재학했던 학교명 등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**
 - 특정대학 이메일 계정 사용금지
- 5) 채용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6) 채용예정 분야에 대하여 지원자가 없거나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- 7)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, 최종합격자에게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8) **지원 서류의 기재착오 및 누락·오류,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.**
- 9) 채용관련 인사 청탁자는 전형에서 제외됩니다.
- 10) 연봉은 재단 규정에 따라 경력사항을 고려하여 체결합니다.

7. 채용서류 반환

<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>

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

-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**대통령령**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**제7조 제1항**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**고용노동부령**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
-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**대통령령**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- ④ 구인자는 **대통령령**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**개인정보 보호법**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구인자는 **대통령령**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- ⑥ **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.**

제17조(과태료)

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**300만원 이하의 과태료**를 부과한다.
 1. **제11조 제3항**에 따른 채용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
 2. **제11조 제6항**을 위반하여 **구직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**

참 고

비수도권 지역인재 범위

※ 아래 참고내용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는 경우, 해당 법령 등이 우선함

< 비수도권 지역인재 >

- (비수도권 지역인재) 대학까지의 최종학력(대학원 이상 제외)을 기준으로 서울.경기.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 학교(지방대학)를 졸업(예정).중퇴한 자 또는 재학.휴학 중인 자

< 비수도권 지방학교 >

가.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

- (1) 「고등교육법」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본교가 서울.경기.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'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원격대학(사이버대학은 제외), 기술대학, 각종학교'
- (2) 「고등교육법」 제24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.경기.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

* (예시) 고려대 세종캠퍼스 , 동국대 경주캠퍼스,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

예시

-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: 지방대학에 해당함
 -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
-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: 지방대학에 해당하지 않음
 -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 24조상의 분교가 아님

- (3)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.경기.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
- (4)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 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

나.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(예시)

- (1) 본교가 서울.경기.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.경기.인천 지역대학
- (2)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

(3) 사이버대학, 디지털 대학 등 「평생교육법」상의 평생교육시설

(4)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

다. 그 외의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

(1)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

(2)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·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

(3) 대학원 및 사이버·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,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,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

※ 붙임1. 직무명세서 각 1부

2.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1부